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3 선고 2020가단51525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프라임

담당변호사 홍수희

피 고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1. 1. 26.

판결 선고 2021. 2. 2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뮤지컬 "D" 공연티켓 판매금채권에 관하여 2020. 1. 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주식회사 E에게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체결된 제1항 기재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채무자'라 한다)로부터 뮤지컬 "F" 공연의 음악 제작 용역을 의뢰받아 수행하였으나 이 사건 채무자로부터 용역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채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65140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20. 3. 12. 위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채무자는 원고에게 58,460,000원 및 그 중 2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9.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1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7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1.부터 2020.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관련민사사건 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채무자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20. 3.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20. 1. 9. 이 사건 채무자와 뮤지컬 "D" 공연티켓 판매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채무자가 2020. 1. 10.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채무자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채무자에 대해

58,4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약정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약정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적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거나,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도 같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4다43909 판결참조).

2) 판 단

가) 이 사건 채무자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 사건 채무자가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채무자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될 것을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주장

피고는 P2P펀딩회사로 투자금 보전을 위해 모든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담보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 사건 채무자에게 2019. 4. 5. 2억 원을 대출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참조)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등 참조).

2) 판 단

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 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관련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채무자에 대하여 약정금채권(58,460,000원 및 그 중 21,45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29.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14,3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9.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2,71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21.부터 2020.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채권에 대해 아직까지 E로부터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E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